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묻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시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돈것
대출
00~\$25,000
하실 분
는 분(Purchase)
Equity
5% 웅자기능
크레딧 웅자
382-4680
525-4889

민법·가정법

변호사: 신혜원



문 이혼시 자녀양육권 결정요인은

〈문〉 저는 세 살된 딸이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5년전에 결혼했고 결혼 기간 내내 서로의 성격차로 극심한 불화가 계속되어오던 중, 더 이상 부부로서 가정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찬성이나 딸만큼은 절대로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수입이 훨씬 많고 저의 수입만으로는 저와 딸이 생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딸은 아래보다는 저에게 밀착되어 있고 저도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남편에 비해 경제력이 월등히 뛰어지는 경우에도 이혼할 경우 딸을 맡아 키울 수 있는지요?

〈답〉 물론 가능합니다. 현행 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시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권의 취득 여부는 귀하나 남편의 수입 또는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이익

을 최대로 보호」(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라는 기준에 입각해 결정됩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자녀의 건강·안전·복지가 어느 쪽 부모에 의해 가장 잘 유지될 것인지 여부, 지금까지 어느 쪽 부모가 자녀 양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해왔는가, 자녀의 특정 부모에 대한 선호도, 이혼 이후 어느 쪽 부모가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일을 권장하고 도모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나이, 엄마에 대한 밀착과 선호도, 귀하로부터 자녀를 격리시키려는 남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귀하가 자녀 양육권의 판결을 무난히 받으시리라 봅니다.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남편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를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문 이혼소송 받았는데 대처요령은

〈문〉 저는 일주일전에 어느 낯선 사람으로부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이혼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들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답〉 귀하가 받으신 서류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환장과 이혼신청서인 것 같습니다. 귀하는 이 서류를 전달받으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30일 이내에 남편의 이혼신청서에 대

응하는 응답서와 그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법적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남편에게도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이혼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자녀재산분배 문제가 우려될 경우, 귀하의 이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답서를 법원에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서류양식과 기입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아내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내 것인가

〈문〉 저는 결혼한지 9년이 된 남편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사업에 한 번 실패한 턱으로 크레딧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집과 차등 모든 재산을 크레딧이 좋은 아내의 이름으로만 구매했습니다. 얼마전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아내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혼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아내가 보낸 이혼서류에는 이러한 모든 재산들이 아내의 개인재산이라고 기입돼 있습니다. 아내의 주장이 정확합니까?

〈답〉 아니라고 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라는 특수한 개념을 채택, 적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결혼한 사람의 결혼기간 중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며 획득한 모든 재산으로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이 별도로 인정하는 결혼한 사람의 개인재산이라는 예외 목록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됐다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이 똑같이 50%씩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이 인정하는 결혼한 사람의 개인재산으로는 ▲결혼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중에 증여·상속을 통해 인수받은 재산 등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결혼 후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결혼기간 중에 벌은 귀하나 부인의 수입으로 집과 차 등을 귀하의 크레딧이 나쁘기 때문에 크레딧이 좋은 부인의 이름으로 구입하겠다면 그러한 재산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커뮤니티 프로퍼티」제도에 입각해 이혼시 귀하와 부인의 공동재산으로 처리될 것이며 귀하는 50%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단, 이러한 결론은 집과 차 등이 부인이 결혼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개인재산이 아니라거나 결혼 후에 부인이 증여나 상속을 통해 물려받은 개인재산으로 인해 장만된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전제로 할 경우입니다.